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11. 18.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1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11월 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행정조직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획실을 설치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방법원의 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분청 총정원 조정 1,013명 → 1,011명
 - 기획실 신설 : 행정4급 1명 증원
 - 방법원 정원조정 : 정원대비 현원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방법원 157명 → 154명(3명 감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영훈)

동조례의 개정내용은 기획실 신설인원 1명 증원과 방법원 3명 감소로 구분청 총정원이 2명 감소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의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와의 균형등을 참작하고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시정원인 방법원 정원의 감소는 당연한 것이며, 새로 설치되는 기획실의 실장(행정4급)의 증원은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도래로 참모적 보좌기능의 강화 필요성과 업무의 3실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따라서 동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
----------	----

제출년월일 : 1996. 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행정조직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획실을 설치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방법원의 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분청 총정원 조정 1,013명 → 1,011명
 - 기획실 신설
 - 행정4급 : 1명 증원
 - 방법원 정원조정
 - 정원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 방법원 157명 → 154명 (3명 감소)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 시정12200-730('96. 9. 1) : 자치구 기획실 관리지침 이첩 시달
- 시정12200-850('96.10.11) : 자치구 행정기구(기획실) 설치승인 및 정원승인서 통보

4. 개 정 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청 : 1,01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총수)..... 1. 구분청 : <u>1,013명</u>	제2조(정원의총수)..... 1. 구분청 : <u>1,011명</u>